

축산업등록제 추진방향



한성일/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지난호에 이어서>

제 3장 축산업등록제 도입내용

3.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축산법 제20조 2, 4)

1) 현황

축산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개정의 필요성

첫째, 축산업을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축산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 결격자로 규정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축산업등록자가 등록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등록제 도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제고)

3) 개정내용

첫째,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업

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①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을 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대표자가 상기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둘째, 축산업등록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하게 된 때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셋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구체적 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축산법 제20조 5, 제47조)

1) 현황

축산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개정의 필요성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농장단위의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등록농장에게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방역 및 안전성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3) 개정내용

첫째, 축산업등록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준

수사항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둘째, 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즉 축사면적에 따른 최대사육가능두수, 농장 및 축사 등의 청결 유지 의무, 축산관련 교육이수 등의 규정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셋째, 가축거래기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등 보관·전달, 방역소독 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하도록 한다.

5. 축산업 등록제 관련 제재규정

| 제재 조치 | 위 반 행 위 등 | 관련조문 |
|---|---|------------------|
|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축산업의 등록을 앗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 제44조 제3호, 제4호 |
| ○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 등록 축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제45조 제3호 1 |
| ○ 등록할 수 없음 - 등록결격사유 | ○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징역 실행을 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시부터 1년 미경과 자 -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취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표자가 상기사항 중 1에 해당하는 법인 | 제20조 2 |
| ○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 사전 지정권고 시정 명령조치 ※ 구체 기준은 시행령 에 정함 | ○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연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 후 2년간 영업을 앗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 년이상 휴업한 경우 | 제20조 4 |
|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축산업 등록자 또는 그 승계자가 영업의 휴업·폐 업·재개 또는 승계 신고를 앗은 경우 ○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경우 ○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위반 경우 | 제47조 |

제 4장 외국의 축산업등록제 운용사례

□ 대만 : 축산업 등기제

○ 19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양돈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양돈장 경영자로 하여금 축산사업장을 등기토록 의무 부과(1998.8.)

- 등기대상 :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지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돼지의 경우 20두 이상)

○ 등기요건

-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직업학교 이상의 수의, 축산과를 졸업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을 수료(1개월 이상)

- 관련 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

○ 등기절차

- 등기는 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재지 현·시에 신청·심사

- 주관기관은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기서 교부

※ 등기사항 변경시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 필요

○ 기타 위생관리

- 축목장은 전담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

○ 벌칙

- 축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 등의 경우에는 3만~9만원의 벌금 부과

□ 벨기에 : Special Sanitation System, SANITEL

○ 모든 가축을 출생에서 도축(폐사) 때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

로 전산 등록토록 함으로써 식품오염이나 질병 발생시 추적이 가능

- 1980년대 후반부터 소에 대해 적용, 현재는 돼지, 면양, 산양 및 가금류 등으로 확대

○ 가축의 등록 : 모든 가축(소는 개체별, 기타가축은 축군별)은 출생후 7일 이내에 출생등록을 해야 함

- SANITEL 등록부, 진료기록, 처방전, 사료구입영수증과 사료검사성적서 등은 바인더 기록부에 편철, 농장에서 보관·관리의 의무화

○ SANITEL에 등록된 가축은 등록부와 함께 이표 부착

- 소는 주황색 2개, 돼지, 면양, 산양, 사슴 등은 축종별로 주홍, 연두, 청색, 녹색 1개

- 이표 분실·훼손시 축주는 지역담당 수의검사관에게 즉시 신고

※ 정부는 SANITEL에 의하여 축종별 농장수와 가축수 파악이 가능

○ 벌칙

- SANITEL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발견시 정부당국에 의해 압수·폐기됨

- 등록내용 불성실·허위 기재시 담당수 의사의 면허 정지 가능

- 이표 부착거부 등으로 이표가 없을 경우 법정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 영국 : Cattle Identification & Registration

○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항 등을 기록 증

명하는 제도(1998년부터 시행)

○ 젓소는 출생 후 36시간 이내, 그 밖의 소는 20일 이내에 이표 부착을 의무화

- 2개 이표 중 하나는 "UK"를, 다른 하나에는 고유번호 기재

○ 한 개의 이표라도 없는 소는 이동, 판매, 도축이 제한되며, 이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28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함

※ Cattle Passport : 모든 소는 생후 7일 이내에 Passport 발급

- Passport가 없는 소는 이동, 판매, 도축이 제한되며, 소가 판매될 때에는 Passport를 소 구매자에게 넘겨야 함(자동차등록증과 유사)

○ Passport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하고, 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3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함

제 5장 축산업등록제 추진상의 과제

현재 정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구상 중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은 확정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축산업 종사자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 나름대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 및 추진상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물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현재 축산업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시장은 실질적으로 완전 개방되었다고 간주해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농가로서는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의 대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축산업인데,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초기진입이 어렵다는 비판 및 비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의 당위성 및 기존에 시행한 바 있는 신고제와의 차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축산농가에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신고제는 현장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현장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이는 시행하지 아니할만 못하다.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 질병예방(특히 광우병, 구제역)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광우병 및 구제역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바, 국외 통제가 어렵다고 해서 국내의 축산업(자판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바, 이를 농가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대상 축종 및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즉 축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축종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다르

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축종별 시책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소의 경우 이미 한우와 젃소는 기술 및 경영상의 특징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지역적인 여건은 물론, 경영형태, 시설보유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등록을 해야 하는 농가당 사육두수의 하한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우농가의 경우 등록최소규모를 성우 50두로 한다면, 이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최소규모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거꾸로 축산업등록제가 갖는 질병예방의 목적은 희석될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등록기준 및 시행세칙을 어떠한 프로세스(process)를 거쳐 만들어 나갈 것인가?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부가 나서야만 하는가, 업계 자율에 맡길 수는 없는가 하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 오다보니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는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유럽이나 일본(현재 고려중임)과 같이 생산자단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기를 권유한다.

다섯째,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혜택이 결국은 대다수 농가에게 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는 바, 어떤 인센티브(incentives)를 제공할 것인가?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바로 이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앞에서 지적한대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이른바 '친환경·명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과 축산업등록제를 어떻게 잘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친환경·명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축산업등록제가 원만히 정착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시스템 구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국양록**